

회계감사보고서

대한파크골프협회

회 계 감 사 보 고 서

<회 계 감 사 개 요>

- 회계감사기간: 2018년 3월29일 ~ 30일
4월18일 ~ 20일
- 감 사 자: 회계감사 성 해 용
- 감 사 사 항: 2017 사업년도 예결산서

본 감사는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회”)의 정관 제24조(임원의 직무) 제4항 제2호 “이사회와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에 의거하여 위의 <회계감사개요>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회계감사보고

1. 본 회계감사는 본회의 제 규정 이행의 적정성과 협회의 연간 활동에 대한검정 등 행정처리 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는 포함되지 않고, 본회의 제 수익과 제 비용의 증빙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한정하여 수행하였습니다.

1) 2018년3월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계감사(공인회계사 감사인)로 선임되었기에 정규 결산시점에 감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2) 발견 및 권고사항으로는

- 가. 본회 정관 제47조의 규정(회계감사 등 ②호: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의 해석을 잘못 판정하여, 감사의견 거절(우리회계법인 감사보고서 2017/6/19 대한체육회 제출)로 판정됨에 따라, 이의 후속 조치 이행사항 (회계시스템 정비를 위한 지도감사 신한회계법인 5/9~6/22)이 감사일 현재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 “협회는 2016년 최초로 복식부기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운영성과표 손익항목 및 재정상태표에 대한 계정별인장을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지적사항의 후속이행조치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미래지향의 발전적인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천적으로 바로잡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및 직원의 직무관련 재교육 및 연수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정관 제40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재산목록” 제출 보고의무 불이행.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하며, 재산목록대장에 평가액(구입가액 등)을 필히 기재하고, 재산목록을 년 1회 필히 보고하도록 촉구합니다.

다. 경영공시의무의 불이행

정관 제56조(경영공시)에 의거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이사회 및 총회 의사록과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6월 30일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사록 (2017년6월22일자)을 공시한 이후, 위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자료는 대한체육회 종목관련단체 경영공시란에도 필히 공시하도록 권고합니다.

라.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의 재정립 요망

본회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한 사무과장의 미지급 퇴직금 14,787,931원을 추가로
퇴직급여로 처리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직원의 퇴직금
통장계좌는 별도의 계좌개설을 하고, 월별 퇴직금 이체를
권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회 계 감 사 (공인회계사) 성 해 용

